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86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 박대출·송언석·권성동

강승규 • 이종욱 • 신성범

유영석 • 유영하 • 김태호

송석준 · 강명구 · 박수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의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 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중 "2023년" 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 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아 개 정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 치) ① (생략) 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2026년</u>-----②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 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할 수 있다.